

#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의안번호	2473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4. 2. 2.

발 의 자 : 고성미 의원

찬 성 자 : 장규권 의원, 이인식 의원

## 1. 주 문
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조례」 제36조에 따라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·세출 결산 승인의 건,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승인의 건 등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-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“구성일로부터 2024. 12. 31.까지”로 한다.

## 2. 제안이유

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·세출 결산 승인의 건,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승인의 건 등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.

## 3. 관련규정

- 지방자치법 제64조(위원회의 설치)
- 금천구의회 기본조례 제36조(특별위원회), 제38조(예산결산특별위원회)

# 관계법령

## [지방자치법]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## [금천구의회 기본조례]

제36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,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. 다만,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안건이나 활동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.

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하며, 위원의 정수는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한다.

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, 활동기간 종료 15일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8조(예산결산특별위원회) 예산안·결산·예비비 지출·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#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위원

의 장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

- |  |
|--|
| <p>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</p> <p>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.<br/>이 경우 위원 선임에 관해서는 제1항의 본문규정을 준용한다.</p> |
|--|

추천자 : 금천구의회 의장

추천일시 : 2024. 2. 2.[금]

추천위원 명단(9명)

위원회명	직 위	성 명	비 고
예산결산 특별위원회	위 원	고영찬	
	위 원	이인식	
	위 원	도병두	
	위 원	정순기	
	위 원	장규권	
	위 원	정재동	
	위 원	엄샛별	
	위 원	윤영희	
	위 원	고성미	